#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1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박성훈

조승환 • 이종배 • 정동만

임이자 • 이인선 • 고동진

박충권 · 김정재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社團體)를 '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'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또,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 (안 제16조)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
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609호)의 의결을 전제 로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4항 본문 중 "제33조의2, 제33조의3"을 "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취업지원) ① ~ ③ (생	제16조(취업지원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4
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	
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	
것을 제외하고는 「국가유공자	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	
률」 제29조제3항, 제30조, 제3	
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31	
조의2, 제32조, 제33조, <u>제33조</u>	제33조
<u>의2, 제33조의3</u> , 제34조, 제34조	의2부터 제33조의4까지
의2, 제35조의2, 제36조, 제37	
조,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	
까지,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	
제39조를 준용한다. 다만, 같은	
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	
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	
립유공자 가구당 3명(취업지원	
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	
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	
다)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.	